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목적)</p> <p>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 그리고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군산금강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p> <p>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 그리고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군산금강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의 의무)</p> <p>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p> <p>⑤ (생략)</p> <p>⑥ 학부모 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p> <p><신설> 제5조 ⑦항</p>	<p>제5조(위원의 의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삭제</p> <p>⑦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원서는 아니된다.</p> <p><신설></p>
<p>제6조(위원의 퇴직)</p> <p>위원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p> <p>① (생략)</p> <p>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단,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p> <p>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p> <p>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p> <p>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p> <p>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p> <p>③ - ⑤ (생략)</p>	<p>제6조(위원의 퇴직)</p> <p>위원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정수)</p> <p>① (생략)</p> <p>②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p>	<p>제7조(위원의 정수)</p> <p>① (생략)</p> <p>② 삭제</p>
<p>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p> <p>① - ③ (생략)</p> <p>④ (선거 홍보) (생략)</p> <p>⑤ (생략)</p> <p>⑥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후 동수일</p>	<p>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선거 공보)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당선자 결정) 1.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p>

현 행	개 정 (안)
<p>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p> <p><신설> 제10조 제6항 2호</p> <p>⑦ (선거인 명부 작성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생략) <p><신설> 제10조 제7항 3호</p> <p>⑧ (생략)</p>	<p>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p><신설></p> <p>⑦ (선거인 명부 작성 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에도 부모중 1명에게만 투표권이 있음. (현행과 같음)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신설> <p>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교원위원 선출)</p> <p>① - ④ (생략)</p> <p>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하기로 한다. 재투표후 동수일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신설> 제11조 제6항</p>	<p>제11조(교원위원 선출)</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p>
<p>제12조(지역위원 선출)</p> <p>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p> <p><신설> 제12조 제1항 하단 및 제2항</p>	<p>제12조(지역위원 선출)</p> <p>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p> <p>②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당원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신설></p>
<p>제13조(보궐선거)</p> <p>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3조(보궐선거)</p> <p>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4조(임원)</p> <p>① - ② (생략)</p>	<p>제14조(임원)</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④ (생략)</p> <p>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 ⑦ (생략)</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제16조(학교내의 자생조직)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제18조(심의사항)	제18조(심의사항)
<p>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p> <p>1. - 5. (생략)</p> <p>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p> <p>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p> <p>8. - 11.(생략)</p> <p>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p> <p>13. - 15.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 제10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p> <p>④ - ⑤ (생략)</p> <p>⑥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p>	<p>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p> <p>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p> <p>8. - 11.(현행과 같음)</p> <p>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p> <p>13. -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p>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제19조(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p>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 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기타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① <삭제></p> <p>②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생략)</p> <p>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 (이하 지원비 등 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p> <p>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u>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p> <p>⑥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p>
제20조(회기)	제20조(회기)
<p>① - ③ (생략)</p> <p>④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p> <p>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p> <p>⑥ 회의는 소집요구시 개최하되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① - ③ (생략)</p> <p>④ 회기는 개최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p> <p>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p> <p>⑥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p>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p>	<p>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p>
제22조(의사 정족수)	제22조(의사 의결·정족수)
<p>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p>① (생략)</p> <p>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제24조의2(시정명령 신청)	제24조의1(시정명령 신청)
<p>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영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회의록 작성 등)</p> <p>① (생략)</p> <p>② <전문개정>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 있다.</p> <p>③ 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5조(회의록 작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전문개정>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u> 2. <u>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u> 3. <u>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③ 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u>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u>를 작성하여 <u>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보고</u>하여야 한다.</p>
<p>제27조 (위원의 제척 등)</p>	<p>제27조 <삭제></p>
<p>제29조(시정명령)</p> <p>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시정명령)</p> <p>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p>
<p>제30조(운영경비)</p> <p>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p>	<p>제30조(운영경비)</p> <p>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p>
<p>제32조(공고)</p> <p>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공고)</p> <p>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규정의 개정)</p> <p>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3조(규정의 개정)</p> <p>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p>